

# 마다가스카르 (Madagascar)

## 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사회보험 당연적용대상	근로자 (전업가정부 포함)	근로자 (전업가정부 및 노동법 적용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)	-
보험료율 (근로자 / 자영자 / 사용자)	1% / - / 4.5% 또는 9.5%	1% / - / 4.5% 또는 9.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법정 월 최저임금 8배 / 법정 월 최저임금	법정 월 최저임금 8배 / 법정 월 최저임금	최저임금 인상
연금수급 요건	60세(상선선원은 55세)	60세(상선선원은 55세)	-
노령연금 지급률	법정 월 최저임금 30% + 최종 10년간 월평균소득 20% + 10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월평균소득 1%	법정 월 최저임금 30% + 최종 10년간 월평균소득 20% + 10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월평균소득 1%	-
일시금	총 근로자 납부금액 + 2% 가산이자	총 근로자 납부금액 + 2% 가산이자	-

## 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및 현행법 : 1968년(연금기금), 1969년(사회보험)

## 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## 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근로자(전업가정부 및 노동법 적용 공공부문 근로자 포함)
- 적용제외 : 자영자, 농부, 1년에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임시농업근로자
- 특별제도 : 공무원

## 4

## 재원조달

- 근로자 : 소득의 1%(단, 전업 가정부인 경우 월 80 ariary)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
 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8배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168,019 ariary(비농업부문), 170,422 ariary(농업부문)
- 자영자 : 해당 없음
- 사용자 : 임금지급액의 4.5%(농업부문) 또는 9.5%(비농업부문); 전업 가정부인 경우 월 584.60 ariary
  - 보험료 부과 하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
  - 보험료 부과 상한소득 : 법정 월 최저임금의 8배
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168,019 ariary(비농업부문), 170,422 ariary(농업부문)
- ※ 보험료는 분기납
- 정부 : 없음, 노동법 적용 공공부문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납부

## 5

##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
    - 60세(상선선원은 55세) 도달
    - 정상퇴직연령 직전 10년 중 28분기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15년 이상(가입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퇴직연령 이후에도 최대 5년 근로 가능)
    - 고용관계 종료(퇴직) 필수
    - 부분연금 : 60세(상선선원 55세) 이상이며, 보험료 납부기간 60분기 이상 포함 가입 기간이 15년 이상이고, 노령연금 납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    - 피부양보조금 : 가입자와 최소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59세 이상(상선선원은 54세)배우자에게 지급
    - 특별보조금 : 장기근속공로상 수상자에게 지급되며, 상장 2개 이상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
    - 노령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  - 연대수당
    - 60세 이상이며 완전 및 부분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자에게 지급
    - 1964년 1월 1일과 1968년 12월 31일 사이 최소 15분기 이상 고용되었어야 하고 1969년 1월 1일에 봉급 근로자였어야 함
    - 고용관계 종료(퇴직) 필수
    - 연대수당은 해외지급 가능

- 노령청산금
  - 60세 이상이며 보험료 납부기간이 최소 4분기 이상인 경우로 노령연금, 연대수당 및 장애연금 모두에 대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
- 장애연금
  - 장애연금
    - 55세(상선선원 50세) 이상이며 소득활동 능력 60% 이상 상실로 판정
    - 최종 10년 중 28분기 납부기간을 포함하여 가입기간 15년 이상
    - 장애연금은 가입자가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 노령연금으로 대체 가능
    - 노령연금에 대한 정상퇴직연령 및 최소가입요건은 소득활동 능력 60% 이상 상실 판정 대상에 한해 5년까지 완화 적용 가능
    - 피부양보조금 : 가입자와 청구 전 최소 2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59세 이상(상선선원은 54세)배우자에게 지급
    - 특별보조금 : 장기근속공로상 수상자에게 지급되며, 상장 2개 이상에 대한 중복 지급 불가
    - 장애연금은 해외지급 가능
- 유족연금
  - 유족연금
   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노령 및 장애연금 또는 연대수당 수급자였거나 45세(상선선원은 40세) 이상으로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
  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, 15세 미만 자녀(학생이나 장애아는 22세)
    - 배우자 유족연금은 재혼할 경우 정지됨
  - 유족청산금
    - 사망자가 정상퇴직연령 이전에 사망하였으며, 납부기간이 최소 4분기 이상이고 노령 및 장애연금, 연대수당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    - 수급권 있는 유족은 배우자, 15세 미만 자녀(학생이나 장애아는 22세)

## 6 급여종류별 지급액

- 노령연금
  - 노령연금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의 30% + 정상퇴직연령 직전 10년간 가입자 월평균조정소득의 20% + 10년 초과 납부기간 1년당 월평균조정소득의 1%
    - 법정 월 최저임금 : 168,019 ariary(비농업 부문), 170,422 ariary(농업 부문)
    - 부분연금 : 노령연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
    - 피부양보조금 : 노령 연금액의 10%
    - 특별보조금 : 장기근속공로상 동메달은 노령연금액의 5%, 은메달은 10%
    - 최소연금액은 보충금 포함 기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    - 최고연금액은 보험료 납부 상한소득의 40%(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) 또는 최종

10년간 가입자 월평균조정소득의 75%(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)

- 노령연금과 산재 장애연금은 동시에 수급 가능하며, 총 급여액은 더 높은 연금액의 100% + 낮은 연금액의 25%
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
-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• 연대수당

- 법정 월 최저임금의 30% + 최종 5년간의 월평균소득의 10% + 5년 초과 납부기간 4분기당 월평균소득의 1%

- 법정 월 최저임금 : 168,019 ariary(비농업 부문), 170,422 ariary(농업 부문)

-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• 노령청산금

- 근로자 총 납부금액에 연 2%의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 지급

○ 장애연금

• 장애연금

- 노령연금의 80% 지급

- 피부양보조금 : 장애 연금액의 10%(보조금 미포함)

- 특별보조금 : 장기근속공로상 동메달은 장애연금액의 5%, 은메달은 10%

- 최소연금액은 보충금 포함 기준 법정 월 최저임금의 60%

- 법정 월 최저임금 : 168,019 ariary(비농업 부문), 170,422 ariary(농업 부문)

- 장애연금과 산재장애연금 수급권 모두 추육의 경우, 높은 연금액의 연금만 지급
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
-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○ 유족연금

• 유족연금

- 배우자연금 :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액의 30% (배우자 실업 시) 또는 15%(배우자 소득활동 종사 및 노령연금, 연대수당 또는 장애연금 수급 시)

- 고아연금 : 순위부터 2명까지 고아 1인당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의 15%, 추가적인 고아 1인당 10% 지급 (완전 고아인 경우 1인당 20%)

- 합산된 유족연금 총액은 사망자가 수급중이거나 수급자격이 있던 연금액의 85%를 초과할 수 없음

- 급여는 분기별 지급

- 급여는 법정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조정됨

• 유족청산금

- 사망자의 총 납부금액에 연 2%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

- 유족청산금 최소금액은 100,000 ariary

- 노동고용 및 공공서비스 사회법령부(Ministry of Labor, Employment, Civil Service and Social Legislation)
  - 전반적인 관리·감독 제공
  - <http://www.mfptls.gov.mg>
  
- 국가사회보험기금(National Social Insurance Fund(<http://www.cnaps.mg>))
  -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
<2019년 ISSA 자료>